

4.3.29 군복무 중 학점인정 규정

제정 2016. 08. 11.

개정 2019. 06. 04.

개정 2023. 11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의 2 군복무(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전체를 포함)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30.›

제2조(용어의 정의) 「이러닝 강좌」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교(이하 ‘본교 이러닝’) 및 나라사랑포털 군 e-러닝(이하 ‘군 이러닝’)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의미한다.

제3조(등록)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, 군 이러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점인정)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,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며,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. 단, 군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또는 연간 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06.04.›

② 본교 이러닝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재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한다. 단, 군 이러닝의 경우 교양과목은 교양 선택으로, 그 외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한다. 다만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신청 시 별첨 <군복무 중 성적인정 신청서>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과목의 백분위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PASS등급을 부여한다.

④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의 표시는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포함한다. 단, 학칙 제41조학기당 취득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⑤ 이러닝 강좌 외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(군경력증명서 인정학점)에 대하여 교양 사회봉사 과목으로 1 학점 당 3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개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9.06.04.›

제5조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,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.

[서식 제1호] <개정 2019.06.04>

군복무증성적인정신청서

소 속	학부(과)		학년
학 번	성 명		
복 학 연 도	복 무 기 간	. . . ~ . . .	
인정신청과목명(사회봉사실적 인정 신청은 팔호안 내용 기재)			
이수과정명 (봉사활동내역)	이수연도 (봉사기간)	이수구분	이수학점 (봉사시간)
총 이수학점 합계	학점		

별첨 : 성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

20

신 청 인 : (인)

지 도 교 수 : (인)

학 부 (과) 장 : (인)

교무처장귀하